

문서번호	안전관리처-490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8.01.26.
공개여부	공개

★차장	팀장	안전관리처장	경영전략본부장	
협 조	인재개발원장			
	산업안전국장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기다』

# 2018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2018. 1

『**안전**을 누리고 **서울**을 즐긴다』

# 2018년 안전보건관리 계획

안전보건관리체계 고도화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함.

[\*관련근거 :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 I. 2018년 안전보건 정책 및 환경

### 1 안전보건 정책(고용노동부)

- 정책목표 :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절반 감축
  - 사고 사망만인율 : ('16) 0.53% → ('22) 0.27%
  - (\* 사망만인율 : 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 중점 추진과제
  - 주체별 역할·책임 명확화 및 실천 ... 안전수칙 준수 및 참여확산
  - 고(高) 위험 분야 집중관리 ... 건설, 기계·장비 등 분야별 맞춤형 대책 마련
  - 현장 관리·감독시스템 체계화 ... 산업안전 감독의 실효성제고 등
  - 안전 인프라 확충 및 안전 중시 문화 확산

### 2 안전보건 환경분석

## Ⅱ. 2017 추진 성과 및 개선 대책

---

### 1. 2017년 산업재해 현황 및 분석

---



3

## 대책 및 평가

---

4

## 2017년 평가(현장중심)

---

## Ⅲ. 2018년 안전보건관리계획

---

### 1 추진 목표

### 2 기본 방향

### 3 추진 과제





## IV. 행정사항

---

### 산업재해발생시 관계법령 준수(전 부서)

- (중대사고) 산업재해 발생즉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안전관리처)
  - ※ 중대사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일반사고) 산업재해 사고발생일 기준 20일 이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안전관리처)
  - ※ 산업재해 미 보고 시 과태료(300~1,000만원) 부과(고용노동부) - 해당부서

### 인재개발원 협업(협조)사항

- 산업안전·보건교육관련 학점 또는 학습시간 관리
- 공단 사이버 인재개발원 안전보건교육 실시 협조
  - 온라인 안전보건교육은 사이버교육 운영업체가 고용노동부 인가를 득한 후 실시

### 안전보건공단 사업장방문 교육 시 결과 제출(해당부서 → 안전관리처)

- 방문교육실시 결과 해당 월 제출

### 매월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결과 제출기한(문서기재) 준수

### 산업재해예방점검 및 산업재해조사시 노동조합 합동점검 실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5조의 2, 2항)

### 상기 내용 전 부서 공지

붙임 : 1. 산업재해조사표 1부.

2. 2017년 산업재해 전년대비 비교분석 1부.



작성 방법

I. 사업장 정보

- ①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면 그 가입번호를 적고 사업장등록번호 기입란에는 국세청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만 적습니다.  
※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은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② 사업장명: 재해자가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실제로 급여를 받는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파견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지휘·명령을 받는 사용자사업주의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예: 아파트를 건설하는 종합건설업의 하수급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가 실제로 하수급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하수급 사업장명을 적습니다.]
- ③ 근로자 수: 사업장의 최근 근로자수를 적습니다(정규직, 일용직·임시직 근로자, 훈련생 등 포함).
- ④ 업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한국표준산업명과 주요 생산품을 추가로 적습니다.  
[예: 제철업, 시멘트제조업, 아파트건설업, 공작기계도매업,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업, 중식음식점업, 건축물 일반청소업 등 ]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과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원도급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도급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의 사업장명과 산재 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를 적습니다.  
※ 파견사업주의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파견사업주의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⑦ 원수급 사업장명: 재해자가 소속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이 하수급 사업장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사업개시번호): 원수급 사업장이 산재보험 일괄 적용 사업장인 경우에는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와 사업개시번호를 모두 적습니다.
- ⑨ 공사 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 수급 받은 단위공사에 대한 현황이 아닌 원수급 사업장의 공사 현황을 적습니다.  
가. 공사 종류: 재해 당시 진행 중인 공사 종류를 말합니다. [예: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도로, 공장, 댐, 플랜트시설, 전기공사 등]  
나. 공정률: 재해 당시 건설 현장의 공사 진척도로 전체 공정률을 적습니다.(단위공정률이 아님)

II. 재해자 정보

- ⑩ 체류자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류자격(기호)을 적습니다.(예: E-1, E-7, E-9 등)
- ⑪ 직업: 통계청(www.kostat.go.kr)의 통계분류 항목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참조하여 세세분류(5자리)를 적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 세세분류를 알 수 없는 경우 알고 있는 직업명을 적고, 재해자가 평소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 및 직위를 추가로 적습니다.  
[예: 토목감리기술사, 전문간호사, 인사 및 노무사무원, 한식조리사, 철근공, 미장공, 프레스조작원, 선반기조작원, 시내버스 운전원, 건물내부청소원 등]
- ⑫ 같은 종류 업무 근무기간: 과거 다른 회사의 경력부터 현직 경력(동일·유사 업무 근무경력)까지 합하여 적습니다.(질병의 경우 관련 작업근무기간)
- ⑬ 고용형태: 근로자가 사업장 또는 타인과 명시적 또는 내재적으로 체결한 고용계약 형태를 적습니다.  
가. 상용: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나. 임시: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사람으로서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사람  
다. 일용: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 또는 매일 고용되어 근로의 대가로 일급 또는 일당제 급여를 받고 일하는 사람  
라. 자영업자: 혼자 또는 그 동업자로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  
마. 무급가족종사자: 사업주의 가족으로 임금을 받지 않는 사람  
바. 그 밖의 사항: 교육·훈련생 등
- ⑭ 근무형태 : 평소 근로자의 작업 수행시간 등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를 적습니다.  
가. 정상: 사업장의 정규 업무 개시시각과 종료시각(통상 오전 9시 전후에 출근하여 오후 6시 전후에 퇴근하는 것) 사이에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 2교대, 3교대, 4교대: 격일제근무, 같은 작업에 2개조, 3개조, 4개조로 순환하면서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 시간제 : 가목의 '정상' 근무형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당 근무시간보다 짧은 근로시간 동안 업무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라. 그 밖의 사항: 고정적인 심야(야간)근무 등을 말합니다.
- ⑮ 상해종류(질병명): 재해로 발생한 신체적 특성 또는 상해 형태를 적습니다.  
[예: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 등]
- ⑯ 상해부위(질병부위): 재해로 피해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적습니다.  
[예: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소화·신경·순환·호흡배설) 등]  
※ 상해종류 및 상해부위가 둘 이상이면 상해 정도가 심한 것부터 적습니다.
- ⑰ 휴업예상일수: 상해발생일을 제외한 3일 이상의 결근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한 일수를 적습니다.(추정 시 의사의 진단 소견을 참조)

III. 재해 발생정보

- ⑱ 재해발생개요: 재해원인의 상세한 분석이 가능하도록 **언제**[년, 월, 일, 요일, 시(24시기준), 분], **어느 장소 및 공정**에서, **어떠한 기계·설비**를 다루면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을 때, **어떠한 재해**가[떨어짐, 넘어짐, 끼임, 무너짐 등] 발생했는지를 상세히 적습니다. 특히 재해가 **왜 발생하였는**지의 내용을 적을 때에는 재해당시 기계·설비·구조물이나 작업환경 등의 불안정한 상태 요인과 재해자나 동료근로자가 어떠한 불안정한 행동을 했는지 인적요인의 내용을 상세히 적습니다.

[작성예시]

발생일시	2013년 5월 30일 금요일 14시 30분
어디서	사출성형부 플라스틱 용기 생산 1팀 사출공정에서
누가	재해자 000와 동료작업자 1명이 같이 작업 중이었으며
무엇을	재해자 000가 사출성형기 2호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를 꺼낸 후 급형을 점검하던 중
어떻게	재해자가 점검중임을 모른 채 동료근로자 000가 사출성형기 조작스위치를 가동하여 급형시이에 재해자가 끼어 사망하였음
왜	재해당시 사출성형기 도어인터록 장치는 설치가 되어있었으나 고장중이어서 기능을 상실한 상태였고, 점검과 관련하여 "수리중·조작금지"의 안전 표지판이나, 전원스위치 작동금지용 잠금장치는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료 근로자가 조작스위치를 잘못 조작하여 재해가 발생하였음

- ⑲ 재해발생 원인: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정비의 부족 등), 작업·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매뉴얼의 불비·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적습니다.

IV. 재발방지계획

- ⑳ "19. 재해발생 원인"을 토대로 재발방지 계획을 적습니다.

## 붙임 2 2017년 산업재해 전년대비 비교분석

### □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 2017년 업종별 재해율은 고용노동부 하반기 발표(예정)

연 도	주요시설 (개소)	근로자수(명)	재해자수(명)			재해율 (%)
			계	사망	부상	
증·감	증) 5	증) 132	감) 6	-	감) 6	감) 0.12%
2017년	397	3,424	4	-	4	0.11%
2016년	392	3,292	10	-	10	0.23%

※ 전년대비 주요시설 증감 현황 : 주차장 2개(훈련원 공원, 신방화역환승센터), 교량 8개(아천IC외 7개소), 언더패스 4개(감소), 입체교차로 1개(감소)  
공공자전거 운영대수 증가(3,900대)

※ 전년대비 근로자수 증가(132명) : 일반직 10명, 공무원 122명 증가

### □ 산업재해 유형별 현황 비교표

\* 우리나라 3대 다발재해(넘어짐, 끼임, 떨어짐)

연 도	계	넘어짐	끼임	떨어짐	베임	미끄러짐	무리한 동작	교통사고	비고
증·감	감) 6	감) 1	감) 1	감) 2	감) 2	-	감) 1	증) 1	
2017년	4	1	-	-	-	1	-	2	
2016년	10	2	1	2	2	1	1	1	

※ 교통사고 : 상수도지원처 계량기 교체원 오토바이와 차량간 사고

부서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연도	계	상수도	돔 경기장	청계천	자전거	추모시설	장애인콜택시	청계천
증·감	감) 6	감) 1	감) 2	감) 2	감) 1	증) 1	-	감) 1
2017년	4	2	-	-	-	1	1	-
2016년	10	3	2	2	1	-	1	1

※ 2017년 상수도 2건(교통사고), 추모시설 1건(미끄러짐), 장애인콜택시 1건(넘어짐)

직렬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연도	계	일반직			서비스직 (장콜)	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직, 일용직)				
		시설	상수도	조경		청소	보안	청소	조리	운전원	배송	상수도
증·감	감) 6	감)1	감)2	감)1	-		감) 1	증) 1	감) 1	감)1	증)1	
2017년	4	-	1	-	1	-	-	-	1	-	-	1
2016년	10	1	3	1	1	-	1	1	-	1	1	-

연령별/성별 산업재해 현황 비교표

※ 산재발생당시 연령

연도	계	30대	40대	50대	60대	남성	여성	비고
2017년	4	-	-	2	2	2	2	
2016년	10	1	2	4	3	8	2	